

의안번호	2204046
의 퇴 인	백승아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2.
추계번호	24E3858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적용시한 일몰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의 적용시한 일몰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2025년 1조 4,571억원 등 2025~2027년 3년간 총 4조 3,632억원(연평균 1조 4,544억원)으로 지방교육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5~2027년, 지방교육세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일몰연장 (안 제1조의2)	14,571	14,543	14,518	43,632	14,54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(적용시한)	○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일몰 3년 연장 - (현행) 2024년 12월 31일까지 -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까지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(적용시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효과가 2025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으로 설정함
-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
-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제도개요 및 징수실적

-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은 과세표준인 담배소비세액에 대해 세율 43.99% 부과(「지방세법」 제151조제1항제4호)

[표 4]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및 담배소비세 징수 실적: 2019~2022년
(단위: 억원, %)

	2019	2020	2021	2022
담배소비세	33,577	35,777	35,579	36,304
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	14,771	15,738	15,651	15,970

자료: 행정자치부 「지방세통계연감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 방법

- 행정자치부 「지방세통계연감」의 실적치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중기재정전망 증감률을 적용하여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함

(3)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의 적용시한 일몰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2025년 1조 4,571억원 등 2025~2027년 3년간 총 4조 3,632억원(연평균 1조 4,544억원)으로 지방교육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5~2027년, 지방교육세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일몰연장 (안 제1조의2)	14,571	14,543	14,518	43,632	14,544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